

대법원 2014다206983 부당이득금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 7. 18. 잘 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하는 점, 배당이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 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한 현실적 필요성,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종래 대법원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3명(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의 **반대의견**이 있음.

1. 사안의 내용

- ▣ 이 사건 부동산에 1995. 5. 25.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1. 10. 13.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됨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또는 그러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각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였음
- 2012. 8. 17. 열린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주)현대상호저축은행은 2순위로 148,417,809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고(1순위부터 5순위까지는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음), 일반채권자인 원고와 피고 등은 6순위로 채권액 중 일부만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됨
- 이에 원고와 피고는 모두 2012. 8. 17.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원고는 이의하지 않았고, 피고만 이 사건 배당금에 이의하여 같은 날 (주)현대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
- 피고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드러나 (주)현대상호저축은행에게 배당되었던 이 사건 배당금을 모두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2. 11. 23. 확정되었음. 그에 따라 피고는 2012. 12. 13. 이 사건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음
- 그 후 원고는 2013. 2. 28.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같은 순위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에 비례한 금액만큼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함
- 제1심과 원심이 모두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자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종래 대법원 판례의 변경을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함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규정

▣ 민사집행법 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다수의견(10명) :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 → 상고기각

▣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 어느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어 배당을 받거나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다른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배당금을 받아갔다면 그는 다른 채권자의 손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그 채권자가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에게 반환되어야 함

▣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가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음

-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은 경우, 이는 '배당표에 따른 배당 실시'라는 절차의 진행에 동의한 것에 불과하고 다른 채권자의 실제적 권리를 승인한 것이 아님

- 민사집행법상 배당이의 하지 않거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확정된 배당표에 기관력이나 배당참가자들에 대한 기속력 등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음
-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나 배당이의 소의 소송계속 소멸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까지 잃게 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규정임**
 -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독일의 구 민사소송법 764조 제2항(현재 독일 민사소송법 제878조 제2항)에서 유래한 것인데, 독일에서도 위 규정을 배당절차가 실체법상 권리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임
 - 구 민사소송법 제593조(민사집행법 제정 전 제155조와 동일한 규정)는 1963. 12. 13. '우선권'만 규정하던 부분을 '우선권 기타(민사집행법에서는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도 배당표에 의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을 상대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취지임
- **배당절차 종료 후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배당이의 소송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반환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함**
 - 잘못된 배당결과를 바로잡는 수단으로 민사집행법은 배당이의소송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 제소권자의 범위나 제소기간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고려하지 않고 배당표의 경정을 명하므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음
 -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잘못된 배당을 바로잡는 경우에도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을 명할 때에는 현행법상 제도적 미비로 인해 취소채권자가 독점적 이익을 취득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면 위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거나 교정할 수단을 잃게 됨

■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해 배당절차의 전반적인 제도보완 없이 절차의 안정만을 강조하여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면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될 우려가 있음

-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에서는 배당표가 실제적 권리관계와 달리 작성될 여지가 크고 배당표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거나 판단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나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배당표가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작성될 수 있는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배당에 관한 송달제도, 배당표원안 열람제도, 배당기일 운영방식 등을 개선하며, 배당절차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확정된 배당표에 기속되도록 하는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보완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절차의 안정만을 강조하여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부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함

라. 반대의견(3명) :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이익을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절차 종료 후 자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내세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음 → 파기환송 의견

■ 이 사건의 판단은 부당이득반환 제도의 실제법적 측면만이 아니라 집행제도와 배당절차의 절차법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물론 민사집행법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할 수 없음

-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절차를 게을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이 없는 채권자의 범위를 '이의한 채권자'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그 문언대로 '이의한 채권자'에 대해서만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임
-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긴 것을 비롯하여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정을 꾀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결단이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나 배당절차 전반에 관한 법리 전개도 이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

■ **민사집행법이 정한 배당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할 수 없음**

- 배당이의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료 후 아무런 제한 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배당표를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수단에 의해 뒤집는 것이 되어 입법취지에 반하고, 배당표에 의한 배당결과를 불안정하게 하며, 배당절차에서 이루어진 여러 행위들을 헛수고에 그치게 함
-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표 확정 후 그 배당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 소송·집행절차상 원리나 필요에 의해 실체법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은 배당절차 뿐만 아니라, 소송·집행절차의 여러 국면(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상소기간, 즉시항고 등)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

■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더라도, 그 채권자는 그 배당절차로 형성된 권리관계에 대해서만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실현이 제한될 뿐, 그 권리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되는 것이 아님**

- 또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그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는 경우에도, 그 다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범위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도 없음

■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배당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민사집행법은 배당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이의를 받은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집행법원이 반드시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제150조 제2항, 제151조 제3항, 제152조 제2항)

-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관계는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실제적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임
-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의 결과로 배당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3. 판결의 의의

- ▣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실제법 질서에 부합하는 점, 배당이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 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한 현실적 필요성,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종래 대법원 판례는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한 판결임
- ▣ 그러나 다수의견 역시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점이나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정 및 효율적 운영을 강조하는 반대의견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음. 다만 개정입법 등을 포함한 배당절차의 전반적인 제도보완이 선행되지 않은 채 절차의 안정만을 강조하여 채권자의 실제법상 권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행사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고,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소송과정에서 충실히 심리·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도운영이라는 것임